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계획(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입주자대표회의)

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2012아1096 소송비용액확정 사건과 관련한 결정 주문에 따라 원고측에서 소송비용 청구 요청(2012.6.22.부터 완납일까지 지연이자 5% 지급요구,연복리)이 있어 소송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

1. 사건번호: 1심 2010구합15391 행위허가처분일부(부담)취소
2심 2010누42500
3심 2011두29106

2. 사건 당사자

- 원 고: *****
- 피 고: 강남구청장

3. 소송비용액 결정 주문내용 : 피신청인(강남구청장)이 신청인(*****))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*****임을 확정한다.

4. 지급처: *****

5. 지급방법: 원고의 청구에 의거 청구계좌에 입금조치

6. 예산과목: 기획예산과, 지방행정역량강화, 법제소송업무관리강화, 소송업무의효율적수행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7. 지급예정일: 2015.7.

8. 지급금액: *****

※ 원고가 요구한 지연이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미지급하고자 함.

붙임 결정문(소송비용액확정) 1부.

청구서 1부. 끝.

주무관 **현동걸** 재건축2팀장 **강동호** 주택과장 **정한호** 도시환경국장 07/01
배경섭

협조자 ★규제개혁법제 **박도규**
팀장

시행 주택과-25525 () 접수 ()
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
전화 02-3423-6092 /전송 02-3423-8842 / 부분공개(6)